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선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원에 대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실습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제도 등 신설, 실습선원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7032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관련 신설제도의 세부적인 사항, 가스 등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제처 「과태료부과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비하고 승무정원 관련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는 등 그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실습선원 정의 반영(안 제2조제5호)

법 제2조 제23호에서 실습선원의 정의가 명시됨에 따라 동 내용을 시행령 중 실습선원 관련 내용에 반영되도록 개정함

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설정(안 제17조의3 신설)

법 제55조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은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연 100분의 20으로 정함

다.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안 제17조의4 신설)

미지급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선원법의 특수성과 유사 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규정함

라.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5, 제17조의6 신설)

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동법 제4항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마.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세부내용 규정(안 제17조의7, 제17조의8 신설)

법 제55조의5 제1항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이 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동법 제3항에 따른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유사입법례인 근로기준법을 참고하고 선원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조를 신설함

바.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 추진선박의 정의 규정(안 제21조 제5항 신설)

법 제64조 제6항에 따라 “가스 등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정의를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 따른 기준(IGF Code : International Code of Safety for Ships using Gases or other Low-flashpoint Fuels)을 충족하도록 정함

사. 승무정원 예외인정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1호 신설)

법 제65조 제3항에서 명시된 승무정원의 결원 충원의무의 예외인정이 선박직원법 제12조에 따른 결원이 생긴 경우 승무기준의 특례와 연계되어 관련민원이 원활히 처리되고, 지방청장을 통한 일괄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청장에게 해당 권한을 위임되도록 규정함

아. 실습선원 운영 지도 및 점검 권한 위임(안 제52조 제4호 신설)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 조사 실시 등 실습선원의 휴식여건 보장, 현장승선실습 계약체결 여부 등 권리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이 실질적으로 집행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실습선원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55조3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
否)에 대해 법 제105조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재가
청구되었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제18조2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혹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동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의5(채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55조의2·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채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채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채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2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선박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6(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실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일부터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그 외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 요구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2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 요구일 전까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8(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7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그 외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승무정원 결원보충 예외허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선장이 법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 시 선박의 명칭·소유자·선적항·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나. 선장이 법 제14조 본문을 위반하여 폭풍우 등 기상 이상이 있거나 떠돌아다니는 얼음덩이, 떠다니거나 가라앉은 물건 등 선박의 항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것과 마주친 경우 그 사실을 가까이 있는 선박의 선장과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100	150	200
다. 선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1호	250	375	500
라. 선장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여객에게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2호	250	375	500
마. 선장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해원의 휴식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3호	250	375	500

바. 선장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선박에 있는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호	60	120	200
사. 선장이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화물에 관한 서류 또는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선내에 갖추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3호	60	120	200
아. 선장이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선박의 충돌·침몰·멸실·화재·좌초, 기관의 손상 및 그 밖의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해 중 다른 선박의 조난을 안 경우(무선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인명이나 선박의 구조에 중대한 경우,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미리 정하여진 항로를 변경한 경우, 선박이 억류되거나 포획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선박에서 중대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자.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흥기, 폭발하거나 불붙기 쉬운 물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그 밖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사람이 즉시 선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5호	60	120	200
차.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4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5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 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 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 만원
카.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 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의 공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6호	60	120	200
파. 선박소유자가 법 제58조를 위반하여 임금대장을 갖추지 않거나 임금 지급 시마다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적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3항제1호	30	60	100

하. 선박소유자가 법 제6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1일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를 기록할 서류를 선박에 갖추두지 않거나, 선장에게 근로시간, 휴식시간, 시간외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7호	60	120	200
거. 선박소유자가 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및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제5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1항제4호	250	375	500
너. 선장이 법 제77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차별 급식을 한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9호	60	120	200
더.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의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 즉시 해양항만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10호	100	150	200
러.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 의약품의 비치와 선내위생의 유지 및 이에 관한 교육의 시행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11호	100	150	200
머. 선박소유자가 법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게 제복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1항제5호	250	375	500
버. 선원이 법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3항제2호	30	60	100
서. 선박소유자가 법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12호	100	150	200
어.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12호의2	1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1 만원	15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 척당 2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통지하지 않은 선박 1척당 4 만원
저.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이 법 제10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고 선박에 승무한 경우	법 제179조제2항제2호	60	120	200
처.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가 법 제109조제2항	법 제179조	100	150	200

을 위반하여 구직·구인등록기관에 구인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을 고용한 경우	제2항제2호			
커. 선원관리사업자가 법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원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그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3호	100	150	200
터. 선박소유자가 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해양항만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4호	100	150	200
퍼. 법 제1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원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장부·서류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의 진술을 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5호	100	150	200
허. 선원이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179조 제1항제6호	250	375	500
고. 선박소유자가 법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16호	100	150	200
노. 선박소유자가 법 제151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9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부 칙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선원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제2조(선원이 아닌 사람)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u>	5. <u>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실습 선원</u>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7조의3(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 연이자의 이율) 법 제55조3 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 한다.</u>
<u><신 설></u>	<u>제17조의4(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55조3 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u> <u>1.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존부(存否)에 대해 법 제10 5조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의</u>

심사 또는 중재가 청구되었거나,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2. 제18조2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거나, 동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령상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신 설>

있는 경우

제17조의5(채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4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2조·제55조의2·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이하 “채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채불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채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의4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채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채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2에

<신 설>

다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금 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법 제55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6(명단공개 내용·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신 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일부터 3년간 게시하는 방
법으로 한다.

③ 그 외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
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제17조의7(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 제외 대상) 법 제55조의5제1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체불선박소유자가 사망하거
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
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선박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
당한다)

2. 체불선박소유자가 법 제55조
의5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

<신 설>

라 한다) 제공 요구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선박소유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선박소유자가 제18조2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
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 요구일 전까
지 체불선박소유자가 체불 임
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
을 충분히 소명하여 해양수산
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의8(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공절차 등) ① 법 제55조의5제1
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④ (생략)

<신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
(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
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17조의7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외 임금 등 체불자료 제
공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선박) ① ~ ④ (현행과 같
음)

⑤ 법 제64조제6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
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 한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위임 한다. <u><신 설></u> 1. · 2. (생략) <u><신 설></u> 3. · 4. (생략) 5. ~ 7. (생략) ② ~ ④ (생략)	<u>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을 말한다.</u> 제52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 ----. 1. <u>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승무 정원 결원보충 예외허가에 관 한 사항</u>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4. <u>법 제129조의2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 현장조사 실시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u> 5. · 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7. ~ 9. (현행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